



공정거래법 시행 25주년을 맞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바란다

윤 세 리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서언 : 지난 25년간의 발전상

지난 4. 1.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시행이 어느덧 25주년을 맞이하였다. 25년이라면 4반세기요 25세라면 남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군에서도 제대한 다음 어딘가에 취직하여 본격적으로 독립된 사회생활을 시작할 나이인 셈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의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를 살펴보면 그에 걸맞은 발전을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아시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외국기업간의 외국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도 역외적용한 흑연전극봉 카르텔 사건에서 마침내 대법원이 4. 1.로 맞는 공정거래법 시행 25주년을 축하라도 하듯이 2006. 3. 23.자 판결에서 이러한 역외적용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국제카르텔 사건을 포함한 수많은 카르텔 사건을 조사하여 최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단일 기업에 부과하였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계 최대의 기업을 상대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조사하여 수백 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아시아 유일의 OECD 경쟁센터를 한국에 유치하였고 세계경쟁당국자회의인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의 제3차 총회를 아시아에서

는 처음으로 유치하기도 하였다. 필자가 금년 5월 초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5차 ION 총회에 초청된 민간전문가로 참여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제 한국은 명실공히 아시아 최고의 경쟁선진국이 되었고 세계에서도 경쟁법상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자신할 수 있었다. 이 점은 우리 이웃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는 일이다.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하여 만족하기에는 이르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마침 평생을 학계와 실무계를 연결하시면서 공정거래법의 연구, 교육과 발전에 바쳐 오신 신임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님의 취임에 즈음하여 이러한 개선점을 밝혀 향후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2. 바람직한 정책방향

첫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살려 위원회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위원회가 수행하기에 경쟁력이 있는 핵심업무를 선택하여 여기에 핵심역량을 집중해 나가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본다면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사건의 처리에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고 민사분쟁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무협의사건들은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작년 말에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 새로 설립된 서울사무소의 효율적 활동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조직개편과 새로운 절차의 도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위원장을 위시한 인사권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따라 민원처리절차를 도입하여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위원회 직원들을 평가해 주어야 효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금까지 위원회의 핵심역량 특히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시간을 독점했던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 경제력집중으로 인한 경쟁제한의 규제로 경제력집중규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열렸던 25주년 학술심포지움의 발제논문에서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집중규제정책은 지난 20년간 변천을 거듭하던 끝에 이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이나 지주회사규제와 같은 행정규제정책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는 감이 든다. 그 동안 위원회의 핵심간부들이 동원되어 여러 방향과 방식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책을 고민하면서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과연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위 심포지움 논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20년간 막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가장 큰 폐해라 할 수 있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나 경쟁제한적 혼합기업결합에 대한 위원회의 규제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사전적이지만 간접적 행정규제 중심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정책에서 탈피하여 사후적이지만 직접적 경쟁제한행위규제 중심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경쟁제한적 혼합기업결합의 규제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여 눈에 띄는 성과를 낸다면 혹 위원회의 이러한 정책 전환이 재벌옹호론이 아닌가 의심하던 논자들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다음 4반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근본적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경쟁선진국은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 같은 경쟁법을 도입한지 얼마 되지 않는 나라들도 이제는 정책수립 및 집행과 사건을 조사하는 기능과 사건 심판기능을 분리하여 별개의 기구로 두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현재의 위원회 조직 중 (심판보좌기능을 제외한) 사무처 조직을 심판기능을 하는 조직과 분리하여 별개의 집행기구화하고 심판기능만 전담하는 조직을 심판위원회 및 그 보좌조직으로 구성된 독립규제위원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국내 행정조직 중에서 이와 반드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체제를 갖춘 경우를 찾는다면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기능의 분리는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올려 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기는 했지만 예산이나 조직개편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실질적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제 명실상부한 경쟁선진국으로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우리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수출해야 할 때에 더 이상 이러한 제약에 얹매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임 위원장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과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망한다.

3. 결언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처음으로 법률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여기에 국민들과 경제계는 물론 법조계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 반드시 법률가가 위원장으로서 최적격

은 아니겠지만 법률가인 위원장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위에서 열거한 세 가지 정책방향은 법률가인 위원장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신임 위원장님께 큰 기대를 건다. **경쟁제衡**